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였으나,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양도 등의 제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토록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취득한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음.(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①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해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및 상속) ①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 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개인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 해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 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제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 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

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소속 시장·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

위원회를 둔다.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기타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용자를 정지할 수 있다.
- ⑥ 감차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 감차규모의 산정방식, 감차위원회의 구성, 감차재원 조성절차 및 관리주체,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가 개정되어 양도·양수가 가능해진다해도 행정관청에서 인가
처리에 따른 별도의 비용발생은 미미함.

4. 작성자

건설교통위원회 신 은 호 의원